

2020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한국항공대학교

목 차

0. 사전공지	0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및 인원	3
3. 지원자격	4
4. 지원자격 심사기준	6
5. 지원방법	9
6. 전형방법	10
7. 신체검사	11
8. 제출서류	12
9. 유의사항	13
10. 전형료	15
1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안내	16
12. 등록안내	18
13. 입학전형 문의	19

- 〈 별첨 〉
1. 자기소개서 양식
 2. 학력조회동의서 양식
 3. 제3국 수학사유서 양식

0 [사전공지]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알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의 2% 선발)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아래와 같이 표준화됨을 미리 알립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정원의 2% 선발) 지원자격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보호자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함
- 기타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심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까지 현재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본교 현재 지원자격]

- 학생 이수기간 : 고교 1년 포함 중·고 연속 2년(비연속 3년) 이상
- 보호자 체류기간 : 학생 이수 기간 동안 1년 이상(비연속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1 전 형 일 정

가. 2년 특례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9. 7. 1(월) 09 : 00 ~ 7. 10(수) 18 : 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하여야 함
필기고사	2019. 7. 22(월)	■ 시험시간,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19. 7. 31(수)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서류 접수	2019. 7. 31(수) 09:00 ~ 8. 9(금) 18:00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2019. 8. 9(금)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분으로 인정 - 발송 2~3일 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최종합격자 발표	2019. 9. 20(금)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 등 안내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2019. 12. 11(수) ~ 12. 13(금) (은행 마감시간까지)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9. 12. 14(토) ~ 12. 19(목) 21:00 까지	■ 추가합격자는 유선으로 개별통지함
추가합격자 등록마감	2019. 12. 20(금) 16:00 까지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2020. 2. 5(수) ~ 2. 7(금)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북한이탈주민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1차	2차	3차							
입학원서 접수	2019. 7. 1(월) 09:00 ~ 7. 10(수) 18:00	2019. 9. 6(월) 09:00 ~ 9.10(화) 18:00	2019.12.26(목) 09:00 ~ 12.31(화) 18: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hak.kau.ac.kr) 또는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하여야 함						
서류 제출	2019. 7.1(월) 09:00 ~ 8.9(금) 18:00	2019. 9. 6(월) 09:00 ~ 9.27(금) 18:00	2019.12.26(목) 09:00 ~ 2020. 1.10(금) 18:00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1) 제출 마지막 날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table> <tr> <td>1차</td> <td>2019. 8. 9.(금) 까지</td> </tr> <tr> <td>2차</td> <td>2019. 9. 27.(금) 까지</td> </tr> <tr> <td>3차</td> <td>2020. 1. 10(금) 까지</td> </tr> </table> 2) 발송 2~3일 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할 것	1차	2019. 8. 9.(금) 까지	2차	2019. 9. 27.(금) 까지	3차	2020. 1. 10(금) 까지
1차	2019. 8. 9.(금) 까지									
2차	2019. 9. 27.(금) 까지									
3차	2020. 1. 10(금) 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9. 9.20(금)	2019. 11. 1(금)	2020. 2.4(화)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 등 안내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2019. 12. 11(수) ~ 12. 13(금) (은행 마감시간까지)		-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3차 시기 합격자는 별도의 예치금 납부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금 전액을 등록금납부기간에 납부함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2020. 2.5(수) ~ 2.7(금)									

※ 북한이탈주민은 1차 시기에만 선발함

2 모집단위 및 인원

자격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모집 인원 계
	학 부(과)	세 부 전 공	입학 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2년특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 - 항공기시스템공학 - 기계공학	213	14	14	16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195	14		
	소프트웨어학과	-	70	7		
	항공재료공학과	-	54	5		
	항공교통물류학부	- 항공교통 - 물류	84	8		
	항공운항학과	-	54	5		
	자유전공학부	-	50	5		
	경영학부	- 경영	107	2	2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체		무 관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전체 (단, 항공운항학과 제외)		무 관		제한없음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및 북한이탈주민전형은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음

3 지원자격

가. 2년특례

1) 학력요건

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이면서,

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비연속으로 통산 3년 이상 중·고등학교를 수료한 자.

※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나라 학제 기준이므로 외국학교(12년 학제)의 10, 11, 12학년을 의미함.
(단, 외국학제가 12년 학제가 아닌 경우 다를 수 있음)

2)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근무(영주)·체류기간 인정범위

번호	지원자격	자격요건	부모의 근무(영주), 체류기간 인정범위			
			구분	해외근무기간	영주(거주)기간	실체류기간
①	영주교포의 자녀	- 해당 보호자와 배우자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	부모	-	연속 2년 이상	연속 1년 이상
				-	비연속 3년 이상	비연속 1년 6개월 이상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당 보호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	해당 부모 또는 모	연속 2년 이상 ----- 비연속 3년 이상	연속 2년 이상 ----- 비연속 3년 이상	연속 1년 이상 ----- 비연속 1년 6개월 이상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지사 설치 인증 후 해당 보호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해당 보호자가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해당 보호자가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 자영업자)	- 해당 보호자가 외국 현지 법인근무 또는 현지 자영업자로 2년 이상 근무하고, 그 배우자는 함께 거주/체류한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단, 선교사와 유학생 자녀는 제외함	부모	연속 2년 이상	연속 2년 이상	연속 1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	비연속 1년 6개월 이상

가) 부모가 자녀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국(영주국)에서 상근(영주)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격 ② ~ ⑤ 해당자는 근무자의 배우자 동반거주(체류)는 관계하지 않음)

나) 부모의 근무, 거주(영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 인정한다.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거주·체류 기간을 산정한다.

3)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

번호	구 분	인정 범위	인정 근무형식
②	해외근무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 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④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번호	지원유형	자격요건	학력요건
⑦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⑧	북한이탈주민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학생은 순수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여야 함

4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한다.
- 2)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 3)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3국 수학 인정 여부를 결정함 (본교 소정 양식의 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필요))

나.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졸업 예정 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인정한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 대학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2)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한다.
-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 4)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

교육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우리나라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5) 수업결손 없이 1년 2개 학기 기준으로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3개 학기 기준의 경우 3개 학기 이수, 4개 학기 기준의 경우 4개 학기 이수)
- 6)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한다.
(예) 중등과정 연속 2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등과정 연속 4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인 경우 중등과정 연속 6학기 또는 8학기 이상 등
- 7)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한다. 단, 해외학교 재학 중에 보호자의 타 국가 인사발령(대한민국 제외) 등으로 인한 제3국 수학은 최대 6개월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 8) 학제가 다른 국가로 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경우는 인정하며, 해당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학기의 누락과 중복 이수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중복학기로 누락된

학기를 채워줄 수 있다.

9) 국내학교와 외국학교 간에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학기로 인정한다.

10)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구분	지원자격 심사 안내사항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table><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고</th></tr><tr><td>10학년 이하</td><td>미인정</td><td>단, 학년제로 인해 <u>부족한 학교교육과정*</u>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d></td></tr><tr><td>12학년제</td><td>상동</td><td></td></tr><tr><td>13학년 이상</td><td>10~12학년/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table> ※ <u>부족한 학교교육과정*</u>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u>부족한 학교교육과정*</u> 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상동		13학년 이상	10~12학년/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u>부족한 학교교육과정*</u> 의 기간만큼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상동															
13학년 이상	10~12학년/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23학기) 모두 국외에서 수학 및 졸업한 자	• 한국에서의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 인정한다.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충족사례 예시

□ 2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 사례

○ 사례 1 :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해외																			누락	A	A	A	A	A

○ 사례 2 :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과 중복의 반복 ⇒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해외			누락	A	A	A	A										누락	A	A	A	A			

○ 사례 3 : 국내와 외국학교 간 1개 학기 이상 중복 ⇒ 1개 학기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해외																			A	A	A	A	A	A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충족 사례

○ 사례 1 : 국내 초등학교 1학년 미취학 후 해외소재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입학 ⇒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공백		(초등1학년 미취학 증빙서류 제출)																					
해외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사례 2 :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취학 후 해외소재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편입학 ⇒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D																							
해외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사례 3 : 국내 수학기간이 존재하지만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한국	D	D					D	D		D	D				D	D								
해외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해외학교는 12학년제를 기준으로 표기함.

※ D는 국내학교, A는 해외학교 재학학기를 의미함.

5 지원방법

가. 지원은 1개 학부(과)만 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은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다. 국적관련개정국적법에 의하여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수시모집(재외국민 전형 포함)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타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나,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된 전형의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이를 위반하여 지원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바. 본 대학교 및 타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의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사.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의 경우, 3월 입학으로 합격한 자는 동일학년도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6 전형방법

가. 2년 특례

1) 전형요소 : 필기고사 100% (총점 100점)

모집단위	시험과목	총점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수학 (시험범위: 수학 I·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100점
- 경영학부	영어	100점

2) 선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선발

가) 필기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발한다.

모집단위	서류제출 대상 인원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모집인원의 4배수
- 경영학부	모집인원의 10배수

나)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충족여부만 판정한다.

○ 최종합격자 선발사정

가) 최종합격자 선발사정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및 “경영학부”로 구분하여 지원자의 석차 순에 따라 사정하며, 학부(과)별 최대모집 가능인원은 입학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버림)로 한다. (단,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14명 이내, 경영학부는 2명 이내에서 선발한다. (2. 모집단위 및 인원 참고))

나)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 (1) 외국 학교 총 재학기간이 많은 자(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 기준)
- (2) 위 항목까지 동점인 경우 본교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1) 전형요소 : 서류평가 100% (총점 100점)

2)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 등 제출한 서류를 본교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만으로 합격자 선발

7

신체검사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만 해당]

구 분	전 형 방 법						
신체검사 대상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항공운항학과 지원자						
신체검사 종류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화이트카드)						
검사기관	항공신체검사 1종 증명서 발급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2019. 4월 현재 해당병원] 인하대병원(인천), 강북삼성병원(서울), 경희대학교병원(서울), 중앙대학교병원(서울),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전남대학교병원(광주), 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 경상대학교병원(진주), 부산대학교병원(부산) ※ 인정병원은 항공신체검사 실시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시방법	- 개인별 자율실시 (사전예약 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병원</th><th>예약방법</th></tr> </thead> <tbody> <tr> <td>인하대병원</td><td>인하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로 예약요청 이메일(uhhpa@inhauh.com) 송부 (메일에는 검사 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 희망일자,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함)</td></tr> <tr> <td>기타병원</td><td>각 병원별 예약 전화번호를 통함</td></tr> </tbody> </table> - 검사예약 및 결과 수령까지 수 주 또는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병원	예약방법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로 예약요청 이메일(uhhpa@inhauh.com) 송부 (메일에는 검사 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 희망일자,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함)	기타병원	각 병원별 예약 전화번호를 통함
병원	예약방법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로 예약요청 이메일(uhhpa@inhauh.com) 송부 (메일에는 검사 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검사 희망일자,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함)						
기타병원	각 병원별 예약 전화번호를 통함						
제출서류	검사결과가 “적합”인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 ☞ 검사결과 “적합”인 경우 신체검사 합격 ☞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인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기타 안내	-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관련 문의 :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02-300-0229)						

8 제 출 서 류

서류명 자격구분	2년특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⑦	북한 이탈 주민 ⑧	비 고
	영주 교포 자녀 ①	해외근무 재외국민 자녀 ②③④⑤	기타 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자영업자)⑥			
입학원서	○	○	○	○	○	본교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	○	대교협 공통 양식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	본교 소정 양식
초.중.고교 재학 성적증명서	○	○	○	○		국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가능
졸업(예정)증명서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보호자,학생)	○ (부,모,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사실)	○	○			부모, 본인이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급 종합병원 발급 항공신체검사 1종 신체검사 증명서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만 해당	○	○	○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한하 며,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야 인정함
학력조회동의서	○	○	○	○	○	본교 소정 양식
영주권 사본	○ (부,모,학생)					
재직(경력)증명서		○				해외근무기간 기재 필요시 인사기록카드 요구
국내은행권에서 발급한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 투자승인서(허가서) 사본		○*				상사주제원만 해당
보호자 특정목적 사유서			○**			국내외 관련기관 발행
제3국 수학사유서(해당자)	○	○	○			본교 소정 양식
유치과학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북한이탈주민 학력증명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어학능력(TOEFL, TOEIC, HSK, JLPT 등) 입증서류, 추천서, 교내외 활동 일체(특기, 봉사, 수상, 자격증 등) 입증 서류, 해외체류국가의 대입성적 및 관련 성적(ACT, AP, SAT 등), 학교프 로파일 등				○		선택사항 본인 해당 서류 제출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발급이 안될 경우 해외지사명이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제출

** 보호자 특정목적 사유서<예시>

- 자영업자 : 해당국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 납입 증명서(발급불가시 '기업회계보고서' 제출)
- 현지법인 근무자 : 해당국 법인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종합기록표(원서접수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할 것

※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 유의사항

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본교 입학관리팀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돌려받는다. (단, 사본을 제출한 자는 합격 및 등록 후 2020년 2월 28일(금)까지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관이 명시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관련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언어 불문)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공증)을 득해야 한다.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공증)이 없는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 중 외국어(영어 제외)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서를 첨부하여 주재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공증)을 득하여야 한다.
 -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는 학교장 직인 이외의 영사확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수학한 수험생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 학교 발급 서류(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해 영사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협약국이거나 가입국이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 아포스티유 문의처 : 외교부 (02-2100-7500)

구 분	내 용
영사확인 필수 문서	해외 발급 서류 (외국어(영어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어번역서를 첨부하여 영사확인 득하여야 함)
영사확인 불필요문서	해외 발급 서류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해외 초·중·고 졸업(예정)·재학·성적증명서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서류

- 4) 제출 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외국학교에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6)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기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서류(재학증명서, 등록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8) 해외에서 국내 초등학교로 편입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해외 재학증명과 성적증명을 대체한다.
- 9)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인 자는 최종 합격 후 졸업 즉시 졸업증명서를 입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11)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나. 수험생 유의사항

- 1) 수험생은 필기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인정 신분증의 종류]

- | | | |
|---|--|--------------------------------------|
| ☐ 주민등록증 |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사진부착) | ☐ 여권(유효기간 이내) |
| ☐ 청소년증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 ☐ 운전면허증 |
| ☐ 학생증(사진부착, 성명, 고교명이 명시된 경우 인정 가능)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함

- 2)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3) 서류 제출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선발 종료시점까지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
- 5) 상기 항목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10 전 형 료

가. 전형별 전형료

구 분	전 형 료	비 고
■ 2년특례	90,000 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45,000 원	
■ 북한이탈주민	45,000 원	

나. 전형료의 반환

- 1) 접수된 입학원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연번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전형료 반환 규모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4와 같이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통해 전형료(접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할 수 있음

-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게 반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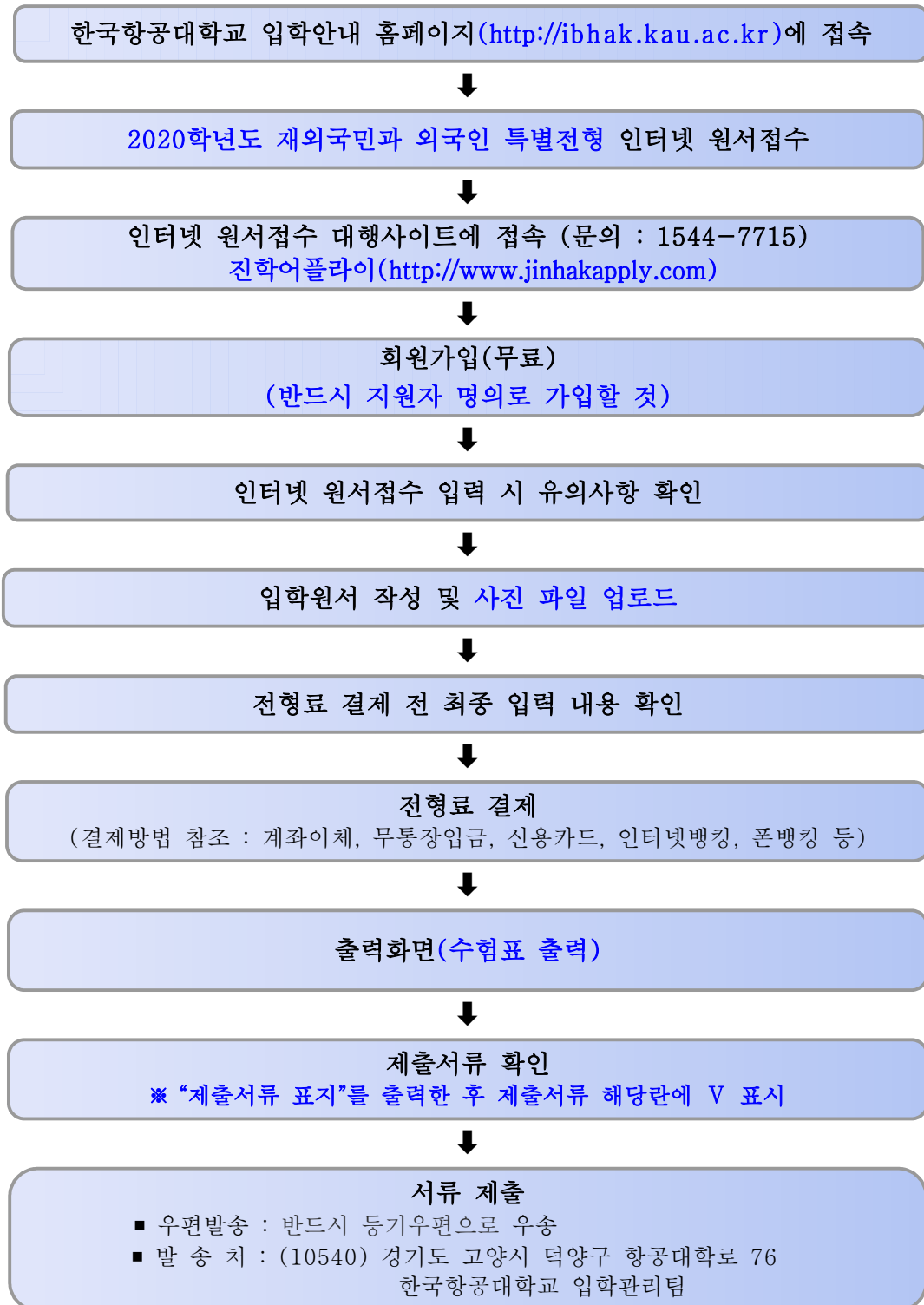
- 반환전형료 수령을 위해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기타

- 1)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지원자 본인이 부담한다.

1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안내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절차



※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웹사이트(www.jinhakapply.com)의 안내 사항을 참조할 것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의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2)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접수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지원자란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4) 지원자란의 “국적” 관련하여 국적관련개정국적법에 의하여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5) 지원자 및 보호자 E-Mail은 유선상으로 신속히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6) 전형료 결제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고 수험표가 출력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수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7)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8) ‘10. 나항’과 관련하여 전형료 반환을 위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수험생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적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대학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에서 위탁 대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출신고교(검정고시),졸업년도, 수험생 주소, 수험생 전화번호, 수험생 E-Mail, 보호자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E-Mail, 보호자 성명, 활용동의 여부, 학력조회 동의 여부,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12 등록안내

가. 등록확인 예치금 납입안내

- 1) 등록기간 : 2019. 12. 11(수) ~ 12. 13(금)
- 2) 등록확인 예치금 : 추후 공지
- 3) 등록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 4) 합격통지서 및 등록확인 예치금 고지서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합격통지서 및 등록확인 예치금 고지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 5) 유의사항 : 예치금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한다.

나. 잔여등록금 납입안내

- 1) 등록기간 : 2020. 2. 5(수) ~ 2. 7(금)
- 2) 잔여등록금 : 추후 공지
- 3) 등록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 4) 등록금고지서 : 2020년 1월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
※ 국가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보훈청에서 발행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지원팀(02-300-0023)에 제출하고 장학혜택을 받은 후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 5) 유의사항 : 잔여등록금 등록기간 내에 잔여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한다.

다. 등록 유의사항

- 1)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등록금(예치금) 납부확인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등록금(예치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히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자는(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 등록기간 전에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 반드시 1개교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최종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약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이 확인될 경우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한다.
- 3)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4) 최종 전형일정이 종료된 후에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입학년도의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한다.

13 입학전형 문의

- 대 표 전 화 : (02) 300 - 0114
- 입학관리팀 : (02) 300 - 0228, 0229, 0446, 0447 (입학전형 및 합격사항, 신체검사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02) 300 - 0023, 0024 (장학금 문의)
- 재 무 팀 : (02) 300 - 0032, 0214 (예치금, 등록금 관련 문의)
- F A X : (02) 3158 - 0037
- 주 소 :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 별첨 1 〉

자기소개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만 해당]

■ 지원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전화번호 : 휴대폰 : (국내 연락처 :)		
지원 학부(과)	학부(과)		
학력사항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까지 모두 작성)	기 간		재학년수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대필 또는 표절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_____ 서명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지원한 모집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계획, 장래 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제출대상자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지원자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성명(한글/영문) Name of Applicant	(Korean/English)
수험번호 Applicant's Slate Number	
지원전형 Support type	☐ 신입학(New entrance) ☐ 편입학(Transfer)
지원학과 Department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	
최종학력 highest level of education	☐ 고등학교(Graduation of High School) ☐ 학부(Bachelor's Degree)
이수전공 Major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재학기간 및 등록학기 Period of Attendance	재학기간: 년 월 ~ 년 월, 총 ()학기 이수 (Year/MM) ~ (Year/MM), Total () semesters completed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력조회 담당부서 Office in Charge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Name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Phone/Fax No.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	

지원자: _____ (확인)
Applicant Signature

KOREA AEROSPACE UNIVERSITY

〈 별첨 3 〉

제3국 수학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 학부(과)			
전화번호 1		전화번호 2	

※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지원자 수학국가		지원자 수학기간	
보호자 근무국가		보호자 근무기간	

※ 지원자 수학국가 및 보호자 근무국가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각 기재

제3국 수학사유

위 내용에 허위 사실 기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 제출대상자 : 지원자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상이할 경우 <모집요강 4.가. 4)항 참조>
 ○ 제출방법 : 원서접수시 웹사이트 상에 제공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사유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한국항공대학교
KOREA AEROSPACE UNIVERSITY

- ☐ 입학처 입학관리팀
- ☐ Homepage : <http://ibhak.kau.ac.kr>
- ☐ E-mail : admission@kau.ac.kr
- ☐ Tel. 02-300-0228, 0229, 0447, 0448
- ☐ Fax. 02-3158-0037